

시설장비 설치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신고인	상 호 (명 칭)	당초	
		변경	
	성명(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설장비명

관리번호

설치항만 및 부두	당초
	변경

설치일

변동사유

「항만법」 제31조 및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1.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상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항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